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4.11.21.
-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4.11.21.
- 라. 상정일자 : 1994.12.15.(제7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가. 제안이유

- 중복된 용어를 보완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실비를 변상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조례제정 시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정정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실비변상 규정 신설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94년도 문화의 거리 위원회를 몇 회 개최하였는지?	• 1회 개최하였고 중동신도시 내에 문화의 거리조성을 위한 폭 8m, 길이 140m로 하기로 확정하였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7
의 결	94. 12. 21
일 자	(제33회)

제출년월일 : 1994. 11. 2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폐지이유

○ 중복된 용어틀 보완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실비를 변상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조례 제정 시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정정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실시변상 규정 신설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문화의 거리조성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회의) 제2항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실시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제	정
제12조(회의) ① (생략)		제12조(회의)(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과반수의 찬성	
(신설)		제12조의2(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4. 11. 21.

나. 제 안 자 : 부 천 시 장

다. 회부일자 : 1994. 11. 21.

라. 상정일자 : 1994. 12. 15. (제7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